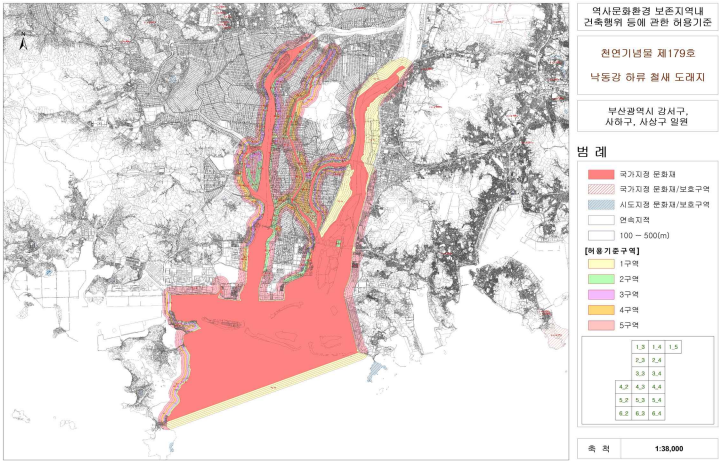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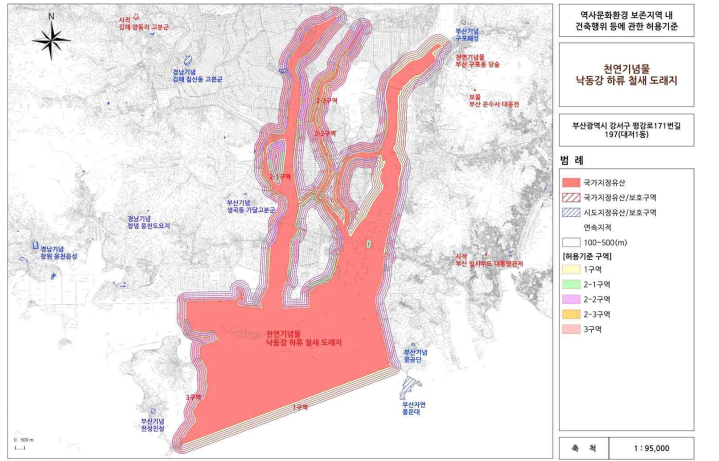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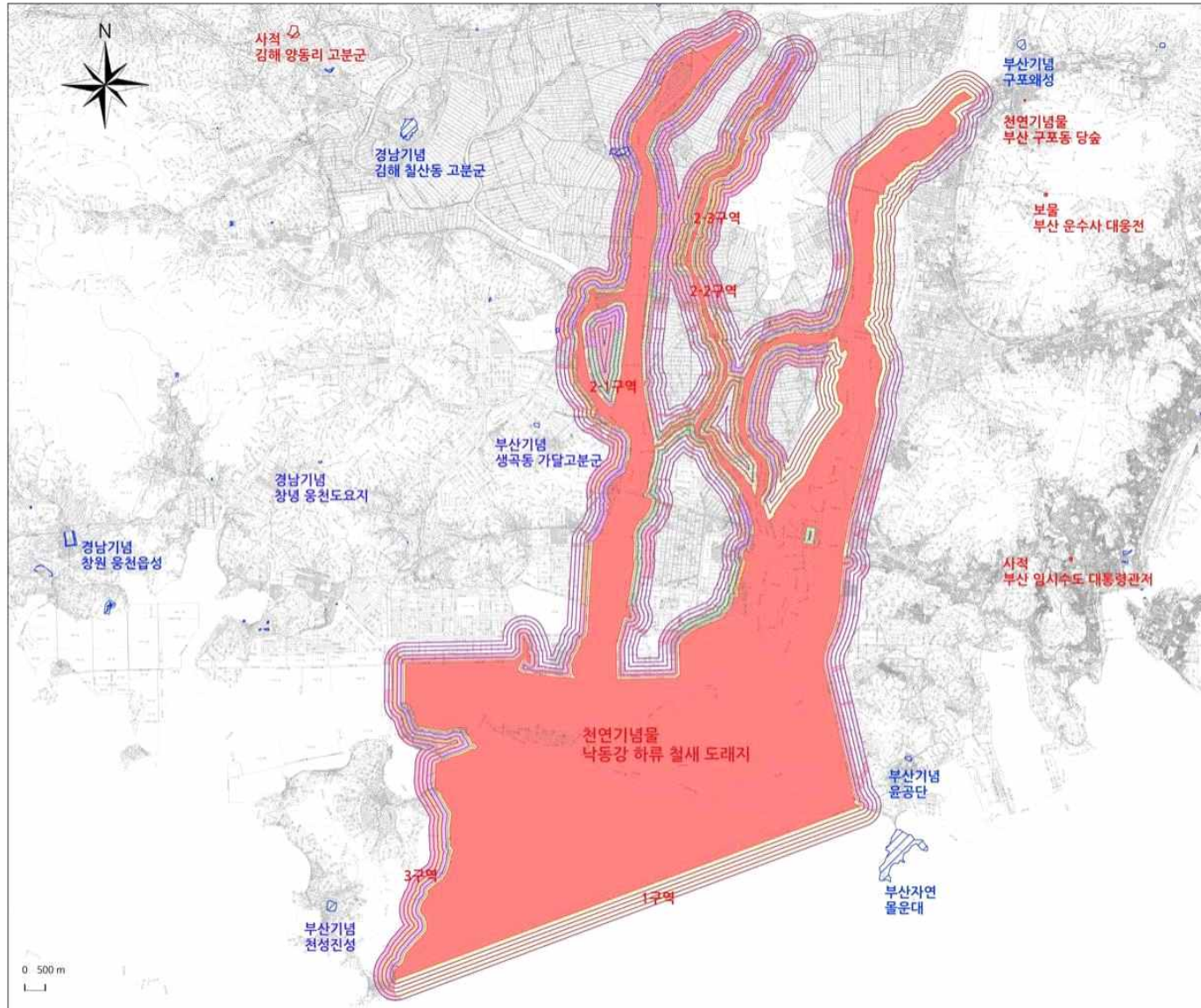


붙임 1. 천연기념물 ‘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안)

▼천연기념물 ‘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’ 허용기준 조정안

구분	현재(2020.02.05.(문화재청 고시 제2020-011 호))		조정안(2026)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고시도					-표기범례 추가항목(빨강), 수정사항(파랑), 삭제권고(취소선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하여야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사용등의 사용을 금합니다.		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하여야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사용등의 사용을 금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고시문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2">허용기준</th></tr><tr><th></th><th>평지붕</th><th>경사지붕(3:10 이상)</th></tr>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 심의</td></tr><tr><td>2구역</td><td>◦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</td><td>◦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</td></tr><tr><td>3구역</td><td>◦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</td><td>◦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</td></tr><tr><td>4구역</td><td>◦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</td><td>◦ 건축물 최고높이 36m 이하</td></tr><tr><td>5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</td></tr><tr><td rowspan="10"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·개축을 허용함.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함.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철탑·그물(골프장 등)·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하는 개별 심의함.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1구역 중 문화재 관리·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하는 허용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1구역 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2~4구역 내 기반시설(부지조성, 도로개설 등) 조성 행위는 허용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</table>		구분	허용기준		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1구역	◦ 개별 심의		2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	◦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	3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	◦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	4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	◦ 건축물 최고높이 36m 이하	5구역	◦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		공통 사항	◦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·개축을 허용함.		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		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		◦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함.		◦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		◦ 철탑·그물(골프장 등)·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하는 개별 심의함.		◦ 1구역 중 문화재 관리·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하는 허용		◦ 1구역 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		◦ 2~4구역 내 기반시설(부지조성, 도로개설 등) 조성 행위는 허용		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	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2">허용기준</th><th rowspan="2">비고</th></tr><tr><th></th><th>평지붕</th><th>경사지붕(10:3 이상)</th></tr>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 검토 (단, 1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하는 허용함)</td><td>수정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2구역</td><td>2-1구역</td><td>◦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</td><td rowspan="3">수정</td></tr><tr><td>2-2구역</td><td>◦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</td></tr><tr><td>2-3구역</td><td>◦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</td></tr><tr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부산광역시,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</td><td>수정</td></tr><tr><td rowspan="10">공통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·개축을 허용함.</td><td rowspan="2">수정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에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/td><td>추가(지침준용)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 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</td><td>수정 및 추가 (법령 및 지침 준용)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-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은 허용함</td><td>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철탑·그물(골프장 등)·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하는 개별 검토함.</td><td>수정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-1구역 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-1구역 기준을 적용함.</td><td>삭제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</td><td>수정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</td><td>추가(법령준용)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2구역 내 기반시설(부지조성, 도로개설 등) 조성 행위는 허용함.</td><td rowspan="2">수정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</table>		구분	허용기준		비고	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1구역	◦ 개별 검토 (단, 1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하는 허용함)		수정	2구역	2-1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	수정	2-2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	2-3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	3구역	◦ 부산광역시,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		수정	공통사항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·개축을 허용함.		수정	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		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에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		추가(지침준용)	◦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 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		수정 및 추가 (법령 및 지침 준용)	-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은 허용함			◦ 철탑·그물(골프장 등)·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하는 개별 검토함.		수정	-1구역 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-1구역 기준을 적용함.		삭제	◦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		수정	◦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		추가(법령준용)	◦ 2구역 내 기반시설(부지조성, 도로개설 등) 조성 행위는 허용함.		수정	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.	
	구분	허용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구역	◦ 개별 심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	◦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	◦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	◦ 건축물 최고높이 36m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구역	◦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통 사항	◦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·개축을 허용함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함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철탑·그물(골프장 등)·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하는 개별 심의함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1구역 중 문화재 관리·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하는 허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1구역 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2~4구역 내 기반시설(부지조성, 도로개설 등) 조성 행위는 허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허용기준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구역	◦ 개별 검토 (단, 1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하는 허용함)		수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구역	2-1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	수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-2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-3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구역	◦ 부산광역시,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		수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통사항	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·개축을 허용함.		수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에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		추가(지침준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 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		수정 및 추가 (법령 및 지침 준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은 허용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철탑·그물(골프장 등)·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하는 개별 검토함.		수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1구역 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-1구역 기준을 적용함.		삭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		수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		추가(법령준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◦ 2구역 내 기반시설(부지조성, 도로개설 등) 조성 행위는 허용함.		수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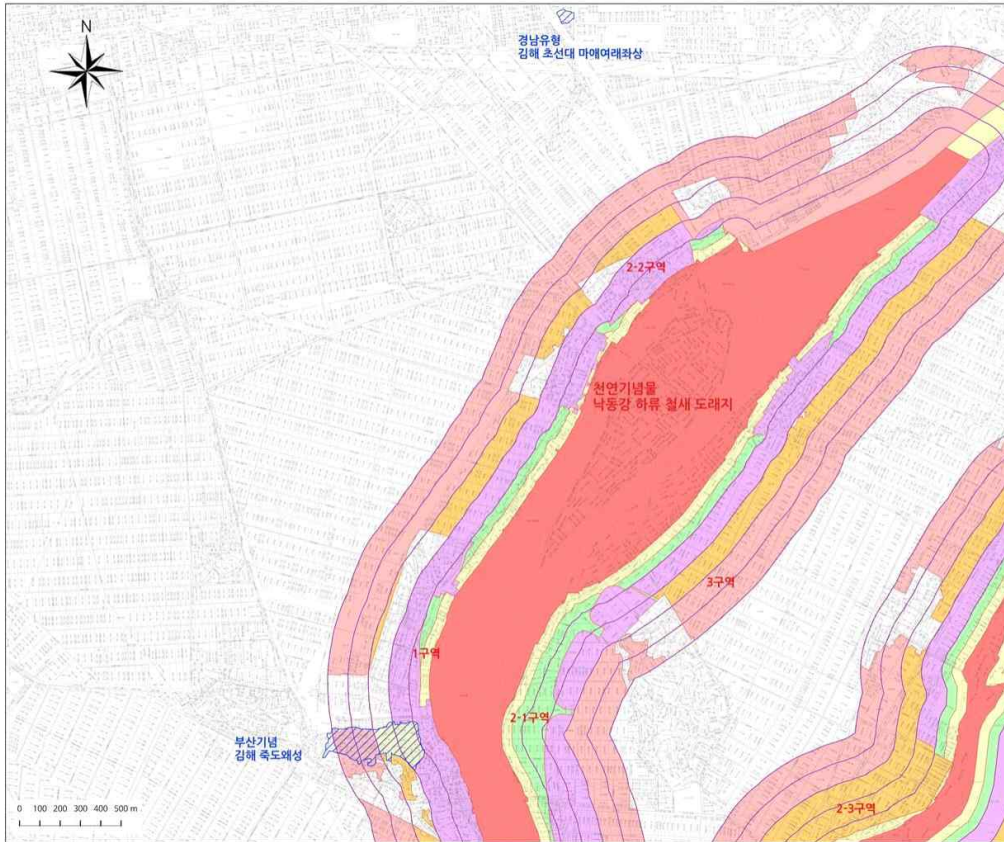
범 례

- 국가지정유산
- 국가지정유산/보호구역
- 시도지정유산/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- 2-1구역
- 2-2구역
- 2-3구역
- 3구역

축 척

1 : 95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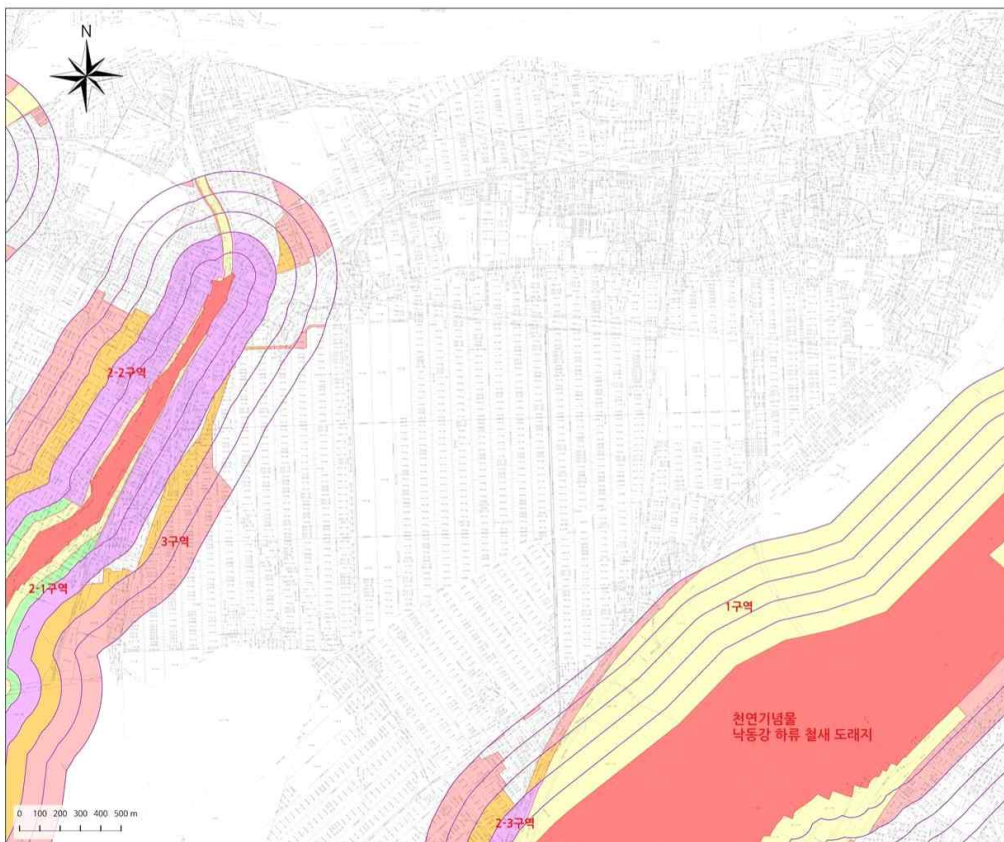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범례

- 국가지정유산
- ▨ 국가지정유산/보호구역
- ▨ 시도지정유산/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- 2-1구역
- 2-2구역
- 2-3구역
- 3구역

축척

1 : 16,000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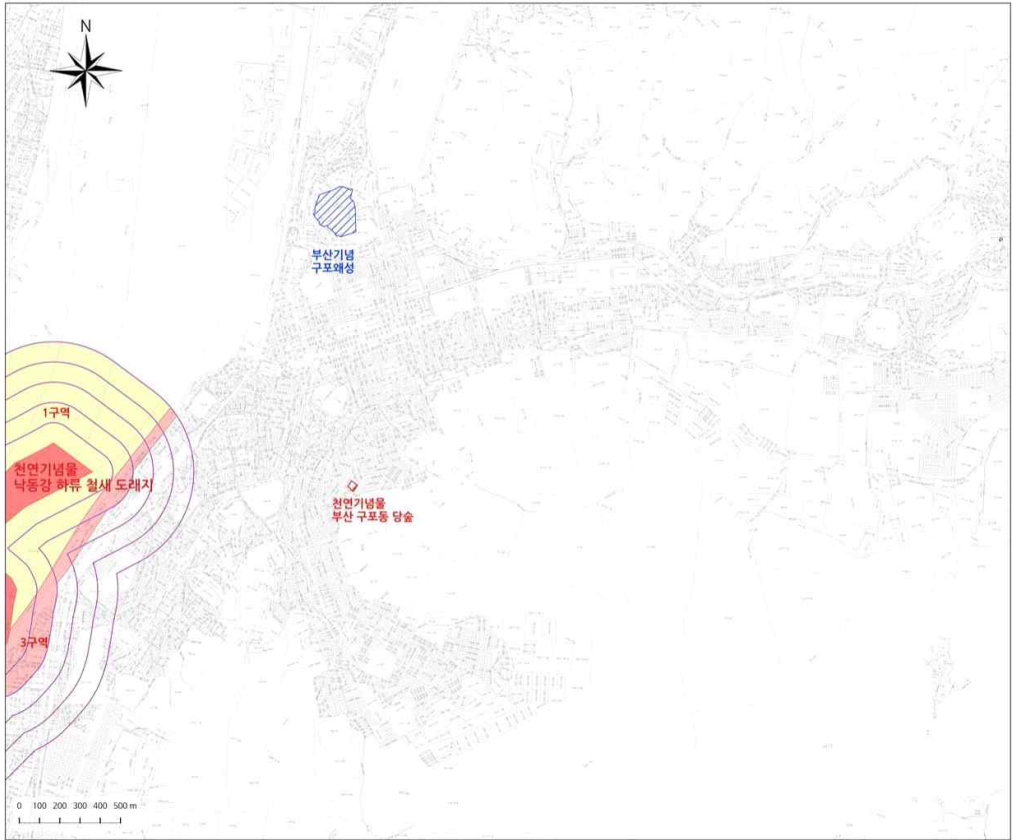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범례

- 국가지정유산
- ▨ 국가지정유산/보호구역
- ▨ 시도지정유산/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- 2-1구역
- 2-2구역
- 2-3구역
- 3구역

축척

1 : 16,000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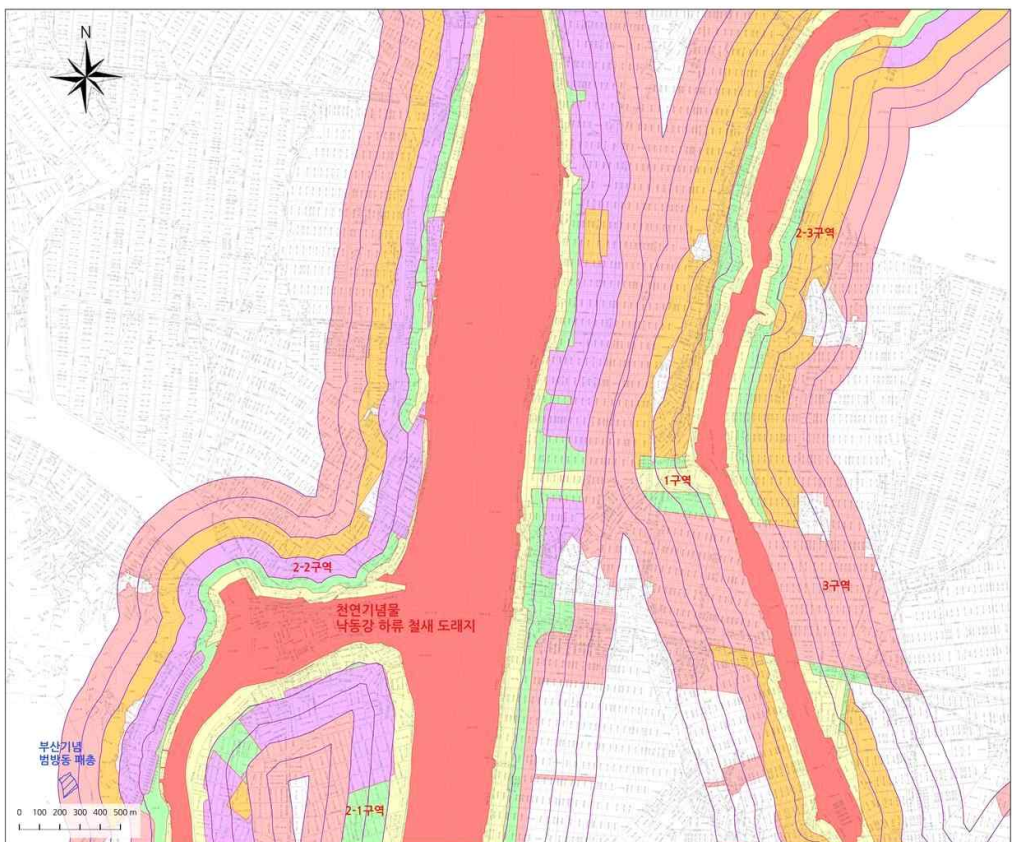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 197(대저1동)

범례

- 국가지정유산
- 국가지정유산/보호구역
- 시도지정유산/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- 3구역

축척 1 : 16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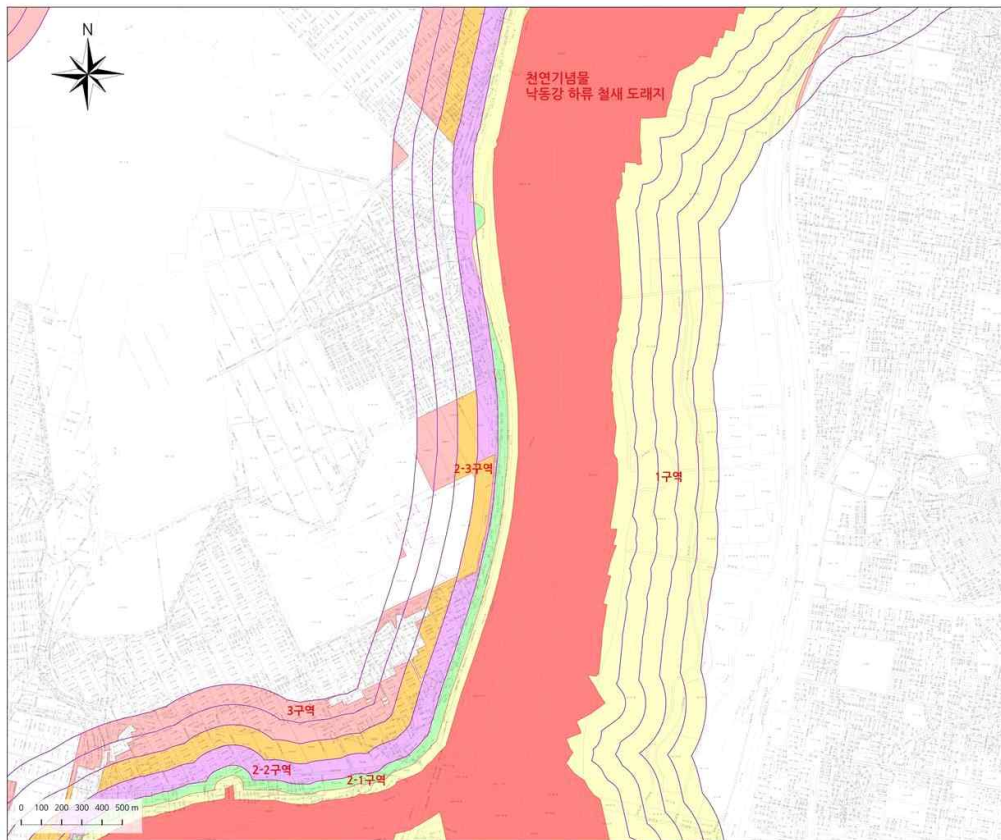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 197(대저1동)

범례

- 국가지정유산
- 시도지정유산/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- 2-1구역
- 2-2구역
- 2-3구역
- 3구역

축척 1 : 16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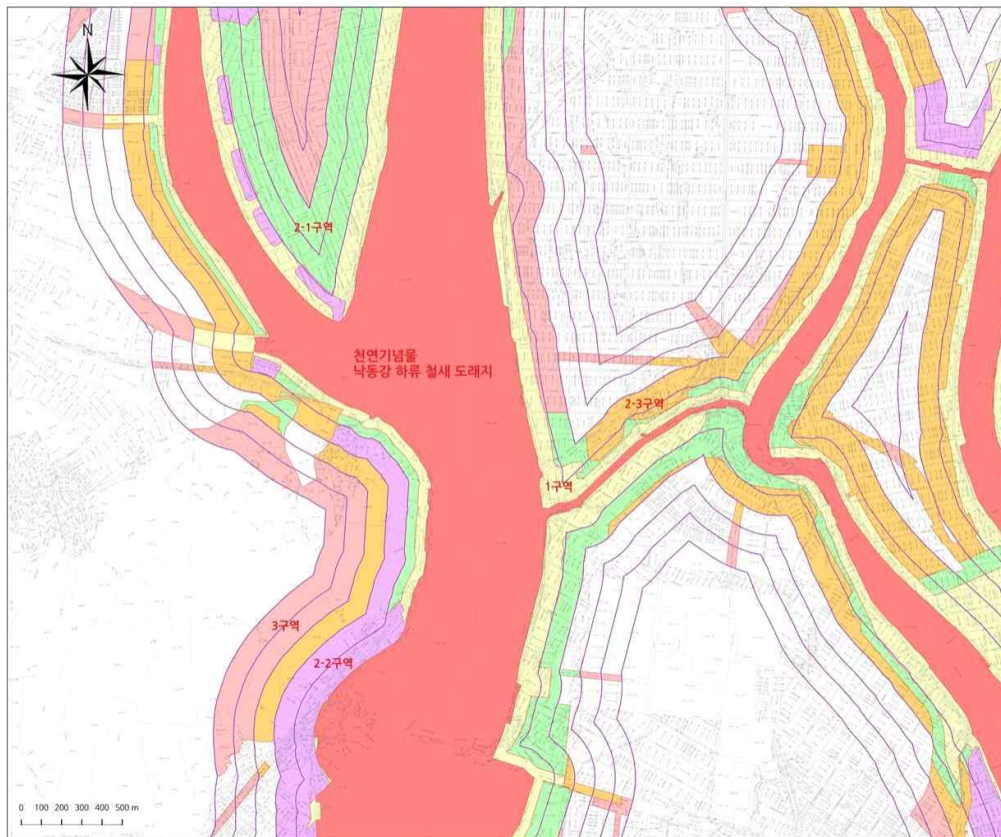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범 례

- 국가지정유산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- 2-1구역
- 2-2구역
- 2-3구역
- 3구역

축 척

1 : 16,000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범 례

- 국가지정유산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- 2-1구역
- 2-2구역
- 2-3구역
- 3구역

축 척

1 : 16,000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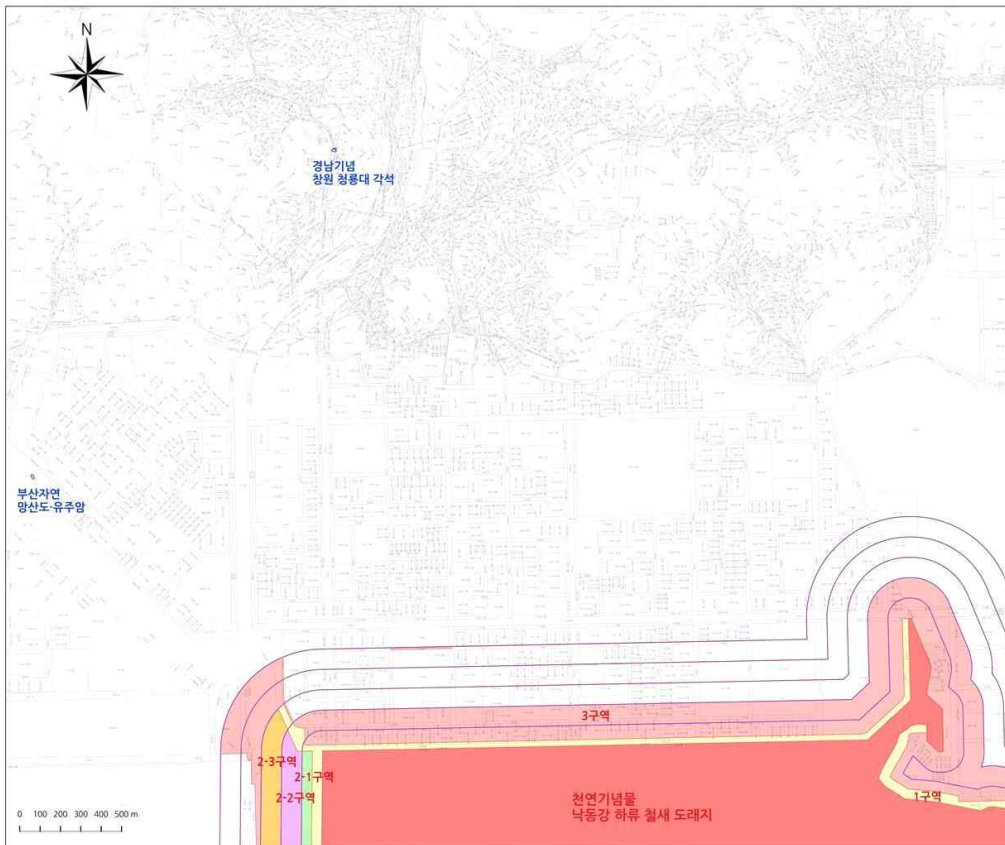
범례

- 국가지정유산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- 2-1구역
- 2-2구역
- 2-3구역
- 3구역

축척

1 : 16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범례

- 국가지정유산
- 시도지정유산/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- 2-1구역
- 2-2구역
- 2-3구역
- 3구역

축척

1 : 16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범 례

- 국가지정유산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- 2-1구역
- 2-2구역
- 2-3구역
- 3구역

축 척

1 : 16,000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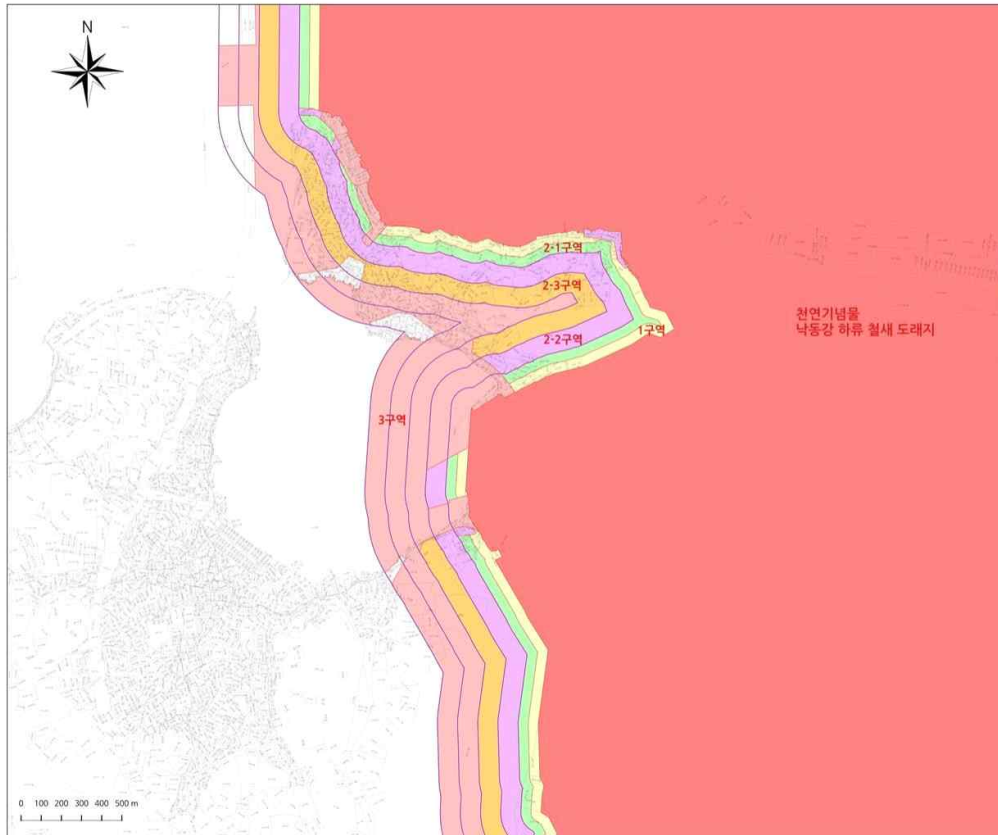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범 례

- 국가지정유산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- 2-1구역
- 2-2구역
- 3구역

축 척

1 : 16,000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범례

- 국가지정유산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- 2-1구역
- 2-2구역
- 2-3구역
- 3구역

축척 1:16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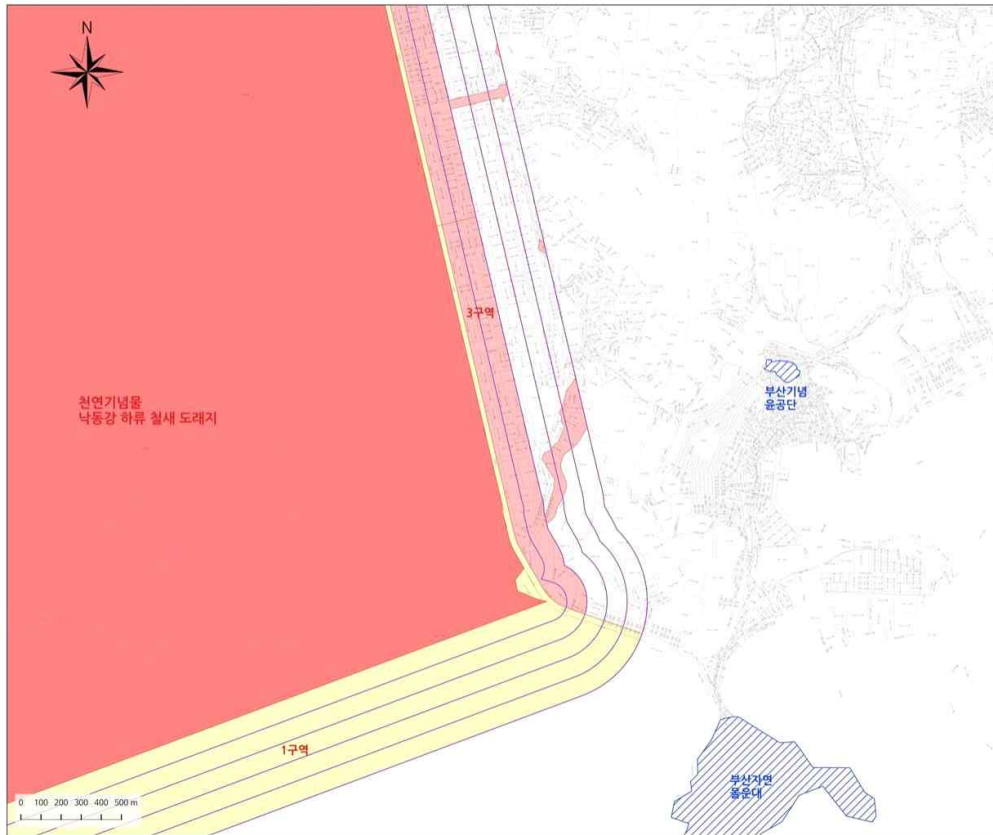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범례

- 국가지정유산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
축척 1:16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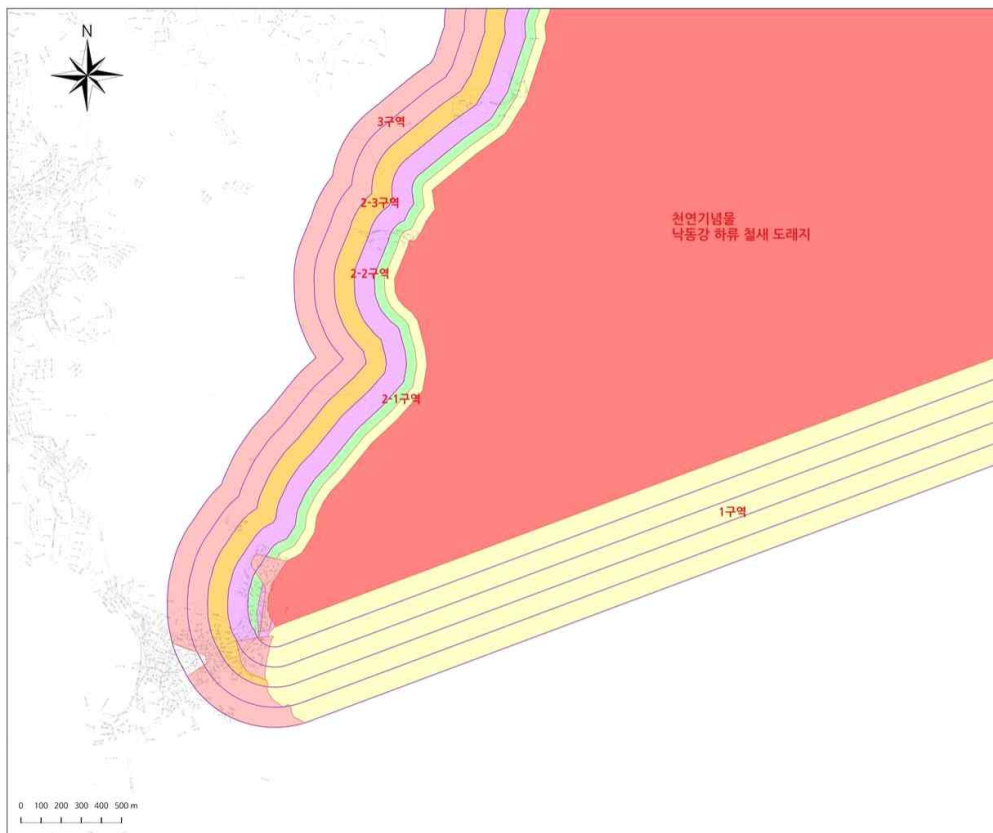
범 례

- 국가지정유산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- 3구역

축 척

1 : 16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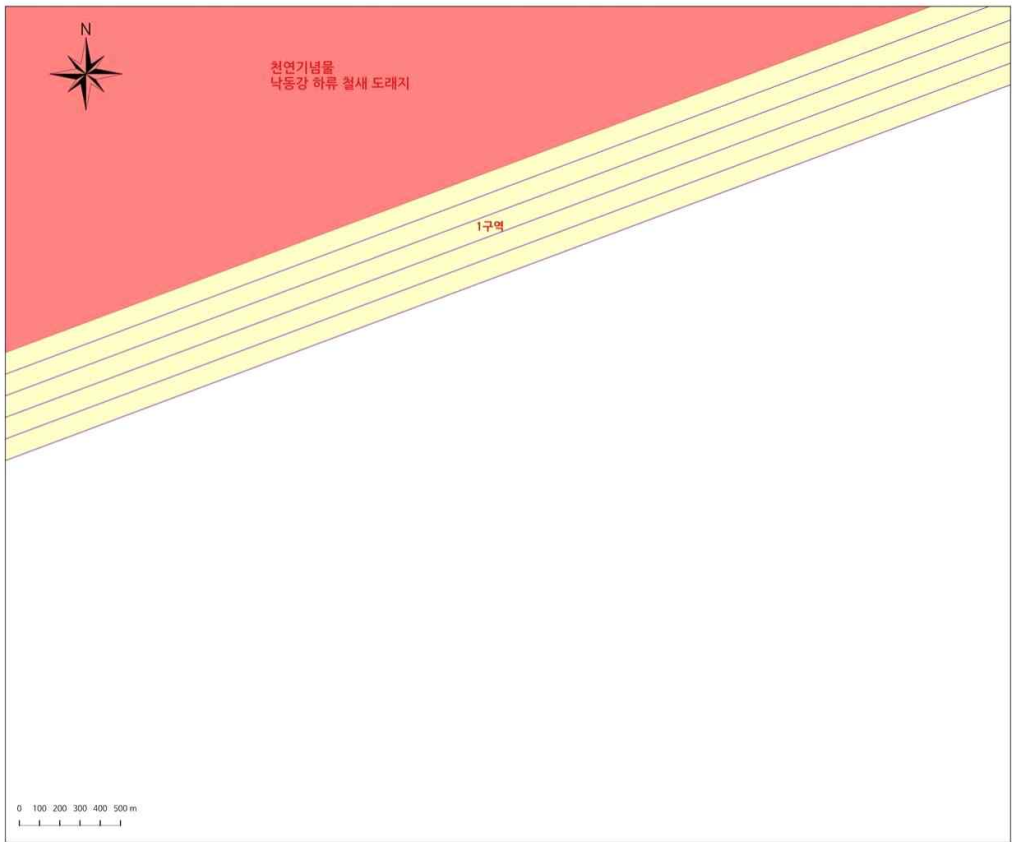
범 례

- 국가지정유산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- 2-1구역
- 2-2구역
- 2-3구역
- 3구역

축 척

1 : 16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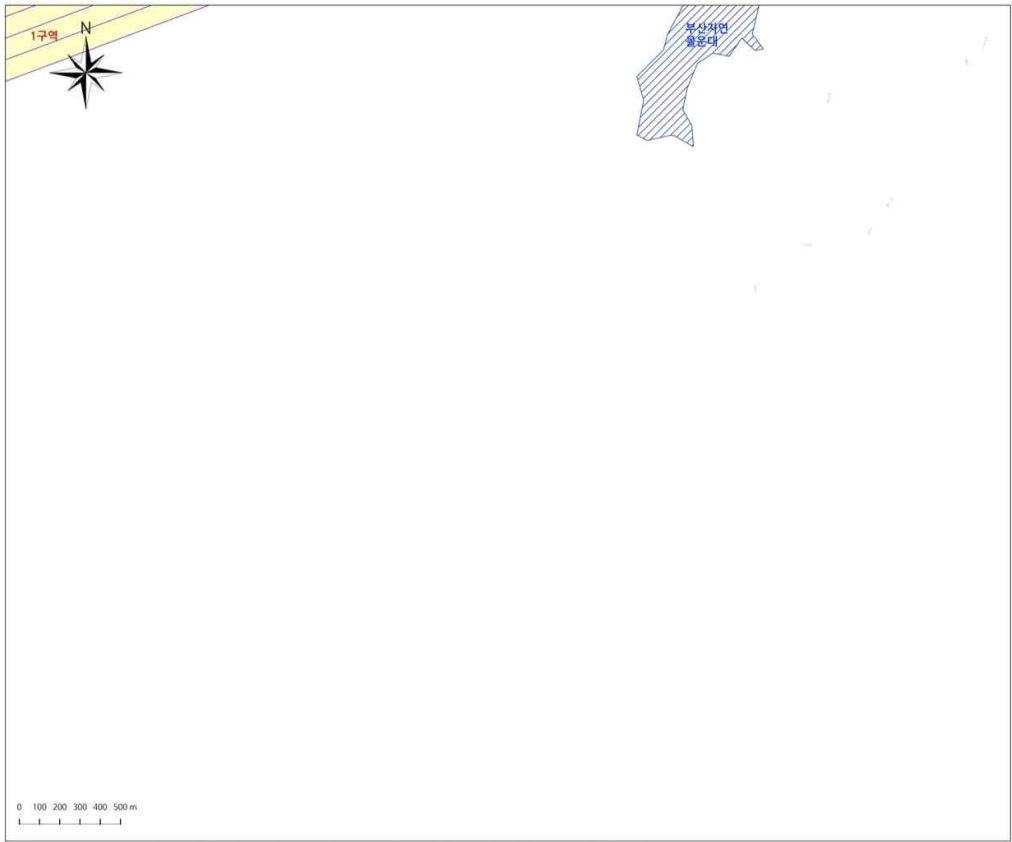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범례

- 국가지정유산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
축척 1 : 16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
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

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171번길
197(대저1동)

범례

- 연속지적
- 100~500(m)
- [허용기준 구역]
- 1구역

축척 1 : 16,0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